

노인 인권 권리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7가지 다짐

1. 우리는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합니다.
2. 우리는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우리는 친절한 미소와 배려로 소통합니다.
4. 우리는 어르신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5. 우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6. 우리는 어르신께 존경어를 사용합니다.
7. 우리는 존엄한 케어를 위해 노력합니다.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회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노인학대 6가지 유형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방임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는 발생 장소에 따라 가정학대, 시설학대로 구분됩니다.

노인학대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1577-1389
112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행위는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이상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등의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7대 예방수칙

-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5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 1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 3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
- 4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있는지 살핍니다.
- 5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합니다.
- 6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 7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